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종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4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종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박춘선,
윤기섭, 윤종복, 이성배,
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
허 · 훈, 홍국표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에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석면 자재의 일부 파손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개·보수에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석면 자재의 일부 파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·대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은 석면자재의 일부파손시 비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7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석면안전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9조(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용 품 및 용구를 제공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9조제7항을 신설하여, 상위법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에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석면 자재의 일부 파손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개·보수에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기편성²⁾하여 시행하고 있어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

2)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사업별 설명자료 1647쪽(교육시설안전과, 410. 노후시설개선, 안전관리(석면제거))